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신설〉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48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5.
3. 회부연월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외국인 등록증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포함하여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 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 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
1. ~ 3. (생략)	-----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
5.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람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u>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¹⁾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대법원은 외국인등록증과 같이 신분증명기능을 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²⁾의 의미에 대해 판시하였음. 즉,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에 의하여 이미 생성되어있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한 사안과 관련,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여 이를 주민등록증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민등록증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음(대법원 2022도13861 판결).³⁾

이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신분증명을 위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 자체’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

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대법원은 “피고인 A는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이용해 스스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에 의하여 이미 생성되어있는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행사한 것은 그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분확인 과정에서 그에 더 나아가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보아 주민등록증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음.

는 것임. 따라서, 타인의 이미지 파일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시한 자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와 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됨.

다만, 개인 신분의 확인 시 편의상 신분증 복사본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로 확인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신분증 원본 없이도 사진만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 해지나 대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또한, 금융거래 등 민간 서비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도 시행하고 있으나, 일면식 없는 타인도 신분증 촬영본만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게 되어 대출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 등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민간의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이미지 도용 피해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원본 외에 전자적 이미지 형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높아졌음을 고려한 입법조치로 보임.

4) 「‘신분증 사진’만으로 예금 인출에 대출까지… 실명확인 구멍」, YTN, 2022.10.23.

- 보이스피싱으로 신분증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 정기예금 해지, 대출 등 피해사례 발생,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 본인인증에 성공한 사례

5) 「포털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해킹… 몰래 대출 2억 5,000만원 빼갔다」, 한경신문, 2022.7.18.

- 포털사이트 클라우드에 신분증과 여권 촬영본을 저장했는데, 계정을 해킹당해 피해자 명의의 금융사에서 대출한 피해사례 발생

「“신분증 사본에 재산 털렸다” 금융업계 비대면 실명확인에 금융사기 속출」, 조선비즈, 2022.7.18.

-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던 신분증 사본으로 사기범이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3,620만원과 비상금대출 300만원, 사잇돌대출 2,000만원 등 대출사기 피해액만 5,920만원에 달한 사례

또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위험이 있다는 점,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⁶⁾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바, 외국인등록증이 실물 제시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제시로도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향후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취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23년 12월 26일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음.⁷⁾

다만, 개정안이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은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문언이 다른바, 용어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6) 민원의 처리결과를 실물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임[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제2119046호) 제안이유 발췌].

7)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참고로, 2024. 8. 13. 시행된 「여권법」도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

또한, 실물 외국인등록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역시 그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이미지 또는 복사본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

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3861 판결 [특수강도, 주민등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1. 28. 마사지업소의 업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이용해 스스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에 의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행사한 것은 그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분확인 과정에서 그에 더 나아가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심이 공문서부정행사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결국 원심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